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3. 12. .
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질문요지서 송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질문을 도출하여 시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 강화.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72조제4항(시장등의 출석요구) 중 “48시간”을 “72시간”으로 질문요지서 송부기한 수정.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2조제4항(시장등의 출석요구) 중 “48시간”을 “72시간”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72조(시장등의 출석요구)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 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시장등의 출석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_____ <u>의장은</u> <u>질문시간 48시간(휴무</u> <u>토요일, 공휴일 제외)</u> <u>전까지 시장에게 도달</u> <u>되도록 하고, 시장은 서면</u> <u>답변서를 24시간(휴무</u> <u>토요일, 공휴일 제외) 전까</u> <u>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u> <u>한다.</u>	제72조(시장등의 출석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_____ <u>72시간</u> _____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중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를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시장은 서면답변서를 24시간(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